

「군포도시공사 유연근무제 시행내규」 일부개정내규를 다음과 같이
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재



2025년 11월 21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 104 호

군포도시공사 유연근무제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

군포도시공사 유연근무제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⑤ 단시간 근로 임직원은 지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
아니하도록 하되, 부득이한 경우 부서장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는
연장근무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기 획 실		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기 획 실 곽 성	장 우	
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신 재	장 두	
	담당자 성명 (전 화)	현 진 환		(3 9 0 - 7 6 4 1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단시간 근로제 복무관리)</p> <p>①~④ (생 략)</p> <p>⑤ 단시간 근로 임직원은 지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도록 하되, 부득이한 경우 부서장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는 <u>연장근무(초과근무 수당은 주 40 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)할 수 있다.</u></p> <p>⑥ (생 략)</p>	<p>제12조(단시간 근로제 복무관리)</p> <p>①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----- <u>연장근무할 수 있다.</u>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